

Ⅲ. 영업규범의 내용 및 분석

1.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규정

가. COB

1) 목적

여기의 규정은 영업규범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1.1.2).

2) 적용대상

COB는 모든 인가업자(firm)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COB 규정에 따라서는 일정한 인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COB 1.2).

3) 적용행위

COB는 모든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COB 규정은 지정투자업(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에 한정하여 적용된다(COB 1.3.1(1), 1.3.2(1)). 또한 예금, 순수보장보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COB 1.3.2(1)). 한편, COB 규정에 따라서는 비규제행위(unregulated activities)에 적용되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으로 있다(COB 1.3.1(1)).

4) 적용고객

COB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고객(client)을 일반소비자(private customers), 중급소비자(intermediate customers), 시장상대방(market counterparties)으로 구분한다.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고객의 종류가 달라진다(COB 1.3.3). 소비자라고 하면 일반소비자와 중급소비자만을 가리킨다.

전문가간투자업(inter-professional investment business)에 대해서는 COB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즉, COB 2.4(chinese walls: 차단벽), COB 4.1(고객 분류), COB 5.5(인가업자에 관한 정보) 중 일부, COB 7.13(personal account dealing: 개인계정거래) 등만 적용된다.

5) 적용지역

COB는 영국의 인가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establishment)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규정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다(COB 1.4).

6) 선임대리인

인가업자는 자신이 허가받은 규제금융행위와 관련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데, 이 때 타인이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이다. COB가 선임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COB 1.7.1). 인가업자는 자신의 선임대리인을 감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임대리인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는 인가업자의 행위로 간주되며, 만약 그 행위가 FSMA2000, COB 등을 위반하면 인가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FSMA2000 제39조).

7) 전자매체

‘서면으로’ 의사소통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COB 1.8.1).

나. ICOB

1) 목적

ICOB의 규정도 영업규범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1.1.2(1)). 한편, 비투자보험에 관한 다수의 EU지침을 국내법화 하는데도 그 취지가 있다(ICOB 1.1.2(1)). 여기의 EU지침에는 비투자보험에 관한 보험매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 비투자보험에 관한 격지판매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 순수보장보험의 해제권 및 정보요건에 관한 통합생명보험지침(Consolidated Life Directive), 손해보험의 정보요건에 관한 제3차 손해보험지침(Third Non Life Directive), 제4차 자동차보험지침(Fourth Motor Insurance Directive) 등이 포함된다.

격지판매지침을 국내법화 하면서, 동 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소매소비자(retail customer), 격지자간계약(distance contract) 등과 같은 개념이 ICOB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2) 적용대상

ICOB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ICOB 1.2.1). 첫째, 보험매개자이다. 보험업자가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보험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매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매개자로 취급된다. 둘째, 상품공급업자(product provider)로서 행위하는 보험업자이다. 셋째,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이다. 넷째, 금융광고를 전달하거

나 승인하는 인가업자이다. 다섯째, 자동차책임보험업자이다. 여섯째, 자동차책임보험업에 관련된 조합(society)이다.

3) 적용행위

ICOB는 비투자보험업에 적용된다. 비투자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순수 보장보험이 포함된다. 재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ICOB 1.2.13).

4) 적용고객

ICOB는 고객을 소매소비자(retail customer)와 기업소비자(commercial customer)로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한다. ICOB의 대부분은 소매소비자에게 적용되지만, 기업소비자에게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ICOB 1.2.5).

5) 적용지역

COB는 영국의 인가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establishment)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규정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다(ICOB 1.3).

6) 선임대리인

선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COB와 동일하다(ICOB 1.6.1).

7) 전자매체

전자매체에 관한 규정은 COB와 동일하다(ICOB 1.7.1).

2.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가. 정보전달의 방식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일정한 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 중에,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2.1.1(1)). 인가업자가 COB 3이 규정하는 금융광고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COB 2.1.1(1)).

(3) 내용

인가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clear, fair and not misleading)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COB 2.1.3).

인가업자는 합리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지정투자업에 대

한 지식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COB 2.1.4).

여기서 정보란 인가업자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COB 2.1.5).

나) ICOB

(1) 취지

여기의 규정은 영업원칙 7을 구체화 한 것이다. 보험업자 등이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일정한 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또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2.1.1(1)). 인가업자가 ICOB 3이 규정하는 금융광고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ICOB 2.1.1(1)).

(3) 내용

보험업자는 COB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ICOB 2.2.3(1)). COB와 마찬가지로 보험업자는 합리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ICOB 2.2.4). 여기서 정보란 보험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ICOB 2.2.5).

다만, ICOB는 COB와 달리 다음과 같은 추가적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관련 정보가 눈에 띄도록 함(prominence of relevant information)은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전달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ICOB 2.2.6). 둘째,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재(materials)와 도안(design)을 사용해야 하고, 강조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특이한 글자모양이나 위치로 인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면에서 일정한 정보가 나머지 정보에 비해서 열등하게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ICOB 2.2.7).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비롯한 모든 인가업자는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이러한 정보전달의 원칙은 금융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도 적다. ICOB의 추가적 규정들도 지정투자과 비투자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정보전달의 원칙을 비투자보험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36조는, “증권회사는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37조는, “증권회사는 시장상황, 유가증권 투자

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가 오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3.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규정한다.

선물거래법 제45조는, “(1)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탁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는, “(1)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97조는,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등, 선물거래법 제45조,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57조, 보험업법 제97조 등은 주로 고객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모든 금융업자에게 확대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B와 ICOB처럼 분명성과 공정성도 정보전달의 원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나. 유인 및 선입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1(인가업자는 정직·공명하게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2.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2.2.1).

(3) 내용

(가) 유인

인가업자는 일정한 행위가 지정투자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소비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와 중대하게(material extent) 상충된다면 금지된다(COB 2.2.3). 일정한 행위란, (a)유인을 제안, 제공, 요청, 수령하는 행

위이거나, (b)자신의 주도로 또는 관계자(associate)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투자업의 실제의 또는 잠재적 항목(item)을 다른 자(person)가 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선임하는 행위이다. (b)가 금지되는 이유는 규제받지 않는 관계자(unregulated associates)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COB 2.2.4).

지위이분법(polarisation rule)이 적용되는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첫째, 인가업자는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와 일정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만약 거래의 총계에 대해 지불된 수당이 동종 거래 각각의 수당의 단순합계를 상회한다면 총계수당(volume overrides)을 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COB 2.2.5(1)). 이러한 규정은 독립매개자가 특정한 인가업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일정 규모 이하의 간접 편익(indirect benefits)은 이익상충을 야기하지 않는다(COB 2.2.6(1)). 이러한 간접편익의 내용에 대해서는 COB 2.2.7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상품공급업자(product provider)의 독립매개자에 대한 지원이 소비자에 대한 독립매개자의 역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COB 2.2.6(1)).

(나) 선임

인가업자가 선임협정(soft commission agreement) 하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브로커(broker)를 통하여 소비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투자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COB 2.2.8). 첫째, 동 협정은 COB 2.2.12가 규정하는 물품 또는 역무의 공급에 대한 서면합의여야 하고 금전이나 기타 직접적 금융수익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브로커가 인가업자에게 최선의 집행을 제공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셋째, 인가업자가 영업조건(terms of business) 및 브로커가 역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소비자에게 상대적 가격 불이익을 안겨 줄 가

능성을 내재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브로커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행하는 거래에서, 금융업자는 협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commission)이 수령할 물품 또는 역무의 가치 및 집행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인가업자는 COB 2.2.16 및 2.2.18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및 사후고지를 행해야 한다.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1과 영업원칙 6을 구체화한 것이다. 보험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2.3.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또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2.1.1(1)).

(3) 내용

(가) 유인

보험업자 등은 유인과 관련하여 인가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ICOB 2.3.2가 COB 2.2.3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유인이란 보험업자 등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person)가 특정한 행위 과정(course of action)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현금 및 그에 준하는 것, 수수료, 물품, 환대 또는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ICOB 2.3.4).

둘째, 고객에 대한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면, 인가업자가 보험매개자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매개자를 지원하거나, 또는 선물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ICOB 2.3.5).

셋째, 제공된 유인이 판매과정 자체에 연관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 과정과 연관되더라도 금지된다(ICOB 2.3.6).

(나) 선임

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비롯한 모든 인가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고객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유인 금지의 원칙은 지위이분법이 적용되는 일괄상품에 대한 특칙이 있을 뿐, 금융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도 적다. ICOB의 추가적 규정들도 지정투자자와 비투자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인 금지의 원칙을 비투자보험에 적용할 구체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COB에 따르면, 고객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인가업자가 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다른 브로커에게 선임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ICOB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1) 유인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 행위”라고 규정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나. 유가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또는 매출후 당해 유가증권의 매수를 ... 약속하는 행위

다. 인수하는 유가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유가증권을 배정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하거나 .. 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1조는,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선물, 접대, 여행주선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비부담 등의 편익(이하 이 조에서 “편익등”이라 한다)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금전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연기금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유가증권 기타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 <개정 2004.5.19>

2.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호의 자의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
(임원등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편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편익등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운용하는 펀드(연금·기금등의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산의 투자실적 제고에 기여하는 편익등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증권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에게 편익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의 소속기관 또는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충실의무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는,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제14조는, “채권유동화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제의·요구·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라고 규정한다.

(2) 선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분석 및 개선안

(1) 유인

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안, 제공, 요청, 수령하는 행위가 자신의 고객에 대한 의무와 상충되는 경우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나라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 제52조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제14조, 보험업법 제98조만이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행위의 유형과 관련해서도 재산상 이익의 제안, 제공, 요청, 또는 수령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의 균형을 고려할 때,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의 원칙을 모든 금융업자로 확대하고 행위의 유형도 네 가지를 모두 포함시키는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

(2) 선임

고객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인가업자가 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다룬 브로커에게 선임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COB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타인에 대한 신뢰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2(인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를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extent)를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3.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2.3.1).

(3) 내용

인가업자는 타인(another person)을 신뢰하여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한 인가업자의 책임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COB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가업자는 타인이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COB 2.3.3). 인가업자는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인이 자신과 관계가 없고(not connected)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2.3.4(1)). 일반적으로, 인가업자는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인이 비관계 인가업자(unconnected authorised person)이거나 전문업자(professional firm)인 경우에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지만, 다만 그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질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COB 2.3.5).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2를 구체화 한 것이다. 보험업자 등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extent)를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2.4.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또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2.1.1(1)).

(3) 내용

보험업자 등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인가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ICOB 2.4.2가 COB 2.3.2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COB 2.3.5와 같은 규정은 없다.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포함한 모든 인가업자는 타인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이러한 타인의 정보의 신뢰에 관한 원칙은 금융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도 적다. COB와 ICOB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접근의 제한

1) 영국

가) COB

(1) 취지

정보접근의 제한 관련규정은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금융고객, 그리고 금융고객과 다른 금융거래상대방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고객과의 이익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chinese wall)을 설정,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COB 2.4.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2.4.1).

(3) 내용

인가업자가 차단벽(chinese wall)을 설정하여 유지한다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인가업자는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withhold) 또는 보유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업의 일정 영역의 피용자들이 자신들의 보유정보에 대해서 다른 영역의 피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가업자가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COB 2.4.4(1) 본문). 다만, 영업이 지정투자업 또는 부수업무(ancillary activities)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COB 2.4.4(1) 단서). 이러한 규정들은 동일한 그룹(group)에 속하는 영업의 서로 다른 영역들(parts) 사이에 차단벽이 설정,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COB 2.4.4(1)).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차단벽을 설정하여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유정보에의 접근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차단벽은 두 가지 경우에 필요하다. 첫째, FSMA2000이 채택하고 있는 금융업의 겸업주의 하에서는 인가업자 내에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고객과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자가 자기계정거래와 고객계정거래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고객과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차단벽이 필요하다. 비투자보험의 경우 이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ICOB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에서도 엄격한 형태의 전업주의는 이미 사라지고 느슨한 형태의 겸업주의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또한 자기계정거래와 고객계정거래를 같이 수행하는 금융업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차단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투자보험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규정하지 않는 I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 책임의 배제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금융고객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exclusion of liability)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5.2).

(2) 적용범위

여기의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2.5.1).

(3) 내용

인가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COB는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첫째, 인가업자는 FSMA2000 등 규제법 하에서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것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COB 2.5.3).

둘째,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통해서, FSMA2000 등 규제법이 규정하는 것 이외의 의무나 책임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것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COB 2.5.4).

의무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비자가 보호되는 정도,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종류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을 구체화 한 것이다. 보험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exclusion of liability)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2.5.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또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2.1.1(1)).

(3) 내용

책임의 배제와 관련하여, 지정투자와 비투자보험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제에 큰 차이는 없다.

첫째, 보험업자 등은 FSMA2000 등 규제법 하에서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이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ICOB 2.5.2).

둘째, 보험업자 등은 소비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통해서, FSMA2000 등 규제법이 규정하는 것 이외의 의무나 책임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것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ICOB 2.5.3). 다만, 이와 관련하여, COB는 일반소비자만 보호대상으로 삼지만, ICOB는 모든 소비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비롯한 모든 인가업자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COB와 ICOB는 내용 면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FSMA2000 등 규제법이 규정하는 것 이외의 의무나 책임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고객의 범위면에서 ICOB가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규정한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는,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약관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약관의 사용금지권고 또는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배제조항이 약관규정이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약관조항을 사용한 것 자체는 행정벌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32조)는 점에서 COB 및 ICOB와는 차이가 있다. COB나 ICOB의 규정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금융광고

가. 영국

1) COB

가)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approve) 행위와 관련하여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3.4.2).

나) 적용범위

(1) 원칙

이 규정은 가변자본투자회사(ICVC)를 제외한 모든 인가업자가 금융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3.1.1). 전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인쇄물 광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개인적 방문,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모든 매개수단이 포함된다(COB 3.2.2).

(2) 예외

첫째, 전문업인가업자(authorised professional firm)의 광고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3.1.5).

둘째, COB는 예금, 순수보장보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COB 1.3.2(1)). 금융광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정(COB 3.1~3.5, 3.8.4~3.8.6, 3.14)이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특별규정(COB 3.2.3)이 있다. 하지만, 순수보장보험 및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특별규정의 의의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규율할 ICOB가 COB의 그 일부규정을 포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급소비자 및 시장상대방에 대한 금융광고로서, 금융광고의 수령자가 중급소비자 및 시장상대방임을 확인하는 합리적 조치를 인가업자가 취했거나, 중급소비자 및 시장상대방에게만 전달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3.2.5(1)).

넷째, 금융광고가 다음 항목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a)인가업자의 명칭, (b)투자의 명칭, (c)연락처, (d)영업표(logo), (e)인가업자의 업무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f)인가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g)인가업자의 상품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h)투자과 비용의 가격 또는 수익 등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3.2.5(5)). 여기서 (e), (f), (g)는 이미지 광고에서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언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COB 3.2.7(3)(b)).

다섯째, 개인적 견적서 또는 설명서에는 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3.2.5(6)).

다) 내용

(1) 주체

인가업자(authorised person) 및 인가업자로부터 금융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자만이 금융광고를 할 수 있다. 이외에는 누구라도 영업상 금융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COB 3.4.1(1)).

(2) 분류

첫째, 실시간(real time) 금융광고와 비실시간(non-real time) 금융광고로 구분된다(COB 3.5.4). 실시간 금융광고란 개인방문, 전화대화 또는 기타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COB 3.5.5(1)). 비실시간 금융광고란 실시간 금융광고가 아닌 것으로서, 편지, 이메일,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가리킨다(COB 3.5.5(1)).

이렇게 실시간 금융광고와 비실시간 금융광고를 구분하는 이유는 전

자에 대해서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직접청약부(direct offer) 금융광고와 일반 광고를 구분된다. 금융광고 자체만으로 금융거래의 청약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금융광고에 따라서는 청약을 부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직접 청약부(direct offer) 금융광고라고 부른다.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그 청약적 성질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따른다.

(3) 준수의 확인

인가업자는 비실시간 금융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그 금융광고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COB 3.6.1(1)). 인가업자는 그 확인 작업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COB 3.6.1(1)).

(4) 형식과 내용

(가) 비실시간 금융광고

① 명칭 및 연락처

금융광고에는 인가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COB 3.8.2).

②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COB 3.8.4(1)).

③ 비교 방법

금융광고가 비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COB 3.8.4(1)).

(a)동일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의도된 투자 또는 역무를 비교한다.

(b)중요하고, 적절하며,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c)인가업자 자신과 경쟁업자 사이에, 인가업자의 상호, 투자, 역무와 경쟁업자의 그것 사이에 혼동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d)경쟁자의 상표, 상호, 투자, 역무 등을 불신케 하거나 경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e)경쟁자의 상표, 상호 등 기타 징표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f)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표, 상호 등을 복제하거나 흉내 내서는 안 된다.

(g)특별청약(special offer)의 경우는 그 종료시점, 특별청약은 투자 및 역무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 특별청약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시시점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④ 보상체계

금융광고가 보상기구(compensation scheme)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사실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COB 3.8.4(3)).

⑤ 기타 일반적 기준

금융광고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COB 3.8.5(1)).

(a)광고 목적은 숨겨져 있거나 부실고지 되어서는 안 된다.

(b)사실, 약속 또는 예측에 대한 진술은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된 전제를 고지해야만 한다.

(c)의견의 진술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d)비교의 대상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전제가 고지되어야 하고, 비교가 공정하고 균형적 방법으로서 오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비교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인가업자의 독립성, 재원, 역무범위, 투자 또는 역무의 부족 등에 관해서 부실고지 해서는 안 된다.

(f)도안, 내용 또는 서식이 본 장이 포함하기를 요구하는 진술, 경고 또는 기타 사안의 중요성을 숨기거나, 흐리거나 또는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g)금융감독청의 승인이 없는 경우 그러한 승인이 있는 것처럼 언급 해서는 안 된다.

(h)어떤 항목의 생략으로 인해서 금융광고가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것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러한 생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i)모든 사실에 대한 진술의 정확성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⑥ 특정한 기준

금융광고는 앞에서 기술한 기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한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특정한 투자 또는 역무에 대해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또는 역무의 특징, 제약요소, 거래위험 등에 대해서 공정하고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COB 3.8.8(1)). 여기서 제약요소라 함은, 예를 들면 투자액의 최고한도, 최소 또는 최대 투자기간 등을 말한다(COB 3.8.9(1)). 공정하고 충분한 기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업자가 피해야 할 행위로, 위험에 대한 공정한 지적없이 투자의 잠재적 수익만을 강조하는 행위, 투자생명보험에서 비확정적(not fixed) 수익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는 행위, 또는 장래에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

은 채 세금혜택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COB 3.8.9(3)).

둘째, 과거 실적에 대한 금융광고의 경우에는 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실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지적하기 위해서 과거 실적에 관한 유의미하고 충분한 기간에 걸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COB 3.8.11).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마치 그것이 미래 실적에 대한 예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COB 3.8.15).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의 과거 실적에 대한 금융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투자기간 또는 이전 5년 중에서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동안의 정보를 제시해야만 한다(COB 3.8.13).

(나) 실시간 금융광고

① 금지

인가업자는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행해서는 안 된다(COB 3.8.21). 요청이란, 수령자에 의해서 실시간 금융광고가 시발되거나(initiated) 수령자의 명시적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서 금융광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COB 3.10.1(1)).

인가업자가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COB 3.10.3). 첫째, 소비자가 인가업자와 계속적 고객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령자가 인가업자로부터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받을 것이 예상된 경우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한 일괄상품으로서 고변동성펀드(higher volatility fund)이거나 또는 투자생명보험이면서 고변동성펀드에 연계되지 않은 (잠재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을 포함) 경우이다. 즉, 고변성을 띠지 않으면, 펀드나 투자생명보험은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규제내용

실시간 금융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실시간 금융광고의 원칙 이외에 다음과 같은 원칙도 지켜야만 한다(COB 3.8.22).

(a)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b)부실고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c)금융광고의 전달시점에 금융광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달자와 자신에게 전달을 위탁한 인가업자를 밝힌다.

(d)전달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미리 수령자의 동의가 없다면, 수령자가 전달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전달을 중지해야 하며, 전달을 중지시키거나 다른 시기에 전달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수령자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한다.

(e)다른 전달자를 알선한 경우에는 그 연락처를 준다.

(f)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관습상 부적당한 시간(unsocial hour)이나 등재되지 않은(unlisted)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g)전달자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고지해야 한다.

(5) 직접청약부 금융광고

(가) 금지

브로커펀드(broker fund)에 대해서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를 할 수 없다(COB 3.9.5(1)). 파생금융상품이나 워런트(warrant)에 대해서는, 인가업자가 이러한 투자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직접청약부 금융광고를 할 수 없다(COB 3.9.5(1)).

(나) 내용 및 형식

직접청약부 금융광고는 누구라도 투자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COB 3.9.6(1)). 이러한 정보에는 법적 지위 등이 포함된다(COB 3.9.7).

일괄상품의 경우에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COB 6.5가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COB 3.9.10).

가치가 변동하는 투자에 대한 금융광고의 경우에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그러한 변동가능성이 수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COB 3.9.15).

투자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고정적 보험급여가 무엇이고 얼마인지, 고정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표현되어야 한다(COB 3.9.18).

철회권 또는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는 투자의 경우에는,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그러한 권리가 표현되어야 한다(COB 3.9.21(1)).

(6) 전자금융광고

인터넷 및 다른 전자매체에 의한 금융광고에 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COB 3.14).

2) ICOB

가)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과 영업원칙 7을 구체화한 것이다. 보험업자가 금융광고(financial promotion)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approve) 행위와 관련하여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3.5).

나) 적용범위

(1) 원칙

이 규정은 비투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인

가업자에 적용된다(ICOB 3.2.1). COB와 마찬가지로 전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ICOB 3.3.3).

(2) 예외

첫째, 보험매개자가 영위하는 보험매개역무, 예를 들면 보험계약의 대리업, 중개업 등에 대한 광고는, 특정 보험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ICOB 3.1.2).

둘째, 전문업인가업자(authorised professional firm)의 광고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I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3.2.4).

셋째, 기업소비자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그 기업소비자를 수령자로 하는 금융광고를 한 경우에는 I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ICOB 3.3.6).

넷째, 금융광고가 다음 항목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I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a)보험업자의 명칭, (b)보험계약의 명칭, (c)영업표, (d)연락처, (e)보험업자의 영업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f)보험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g)보험업자의 상품에 대한 간략한 사실적 기술 등이다(ICOB 3.3.6).

다섯째, 재보험계약이나 대규모위험보험계약(contract of large risks)에만 관계된 금융광고에는 ICOB 3이 적용되지 않는다(ICOB 3.1.2).

COB와 달리 개인적 견적서 또는 설명서가 적용제외로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 내용

(1) 주체

인가업자 또는 인가업자로부터 금융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자만이 금융광고를 할 수 있다. 이외에는 누구라도 영업상 금융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COB 3.5.1(1)).

(2) 분류

ICOB도 COB처럼 실시간 금융광고, 비실시간 금융광고로 구분하지만(ICOB 3.1.2, 3.6.2(1)), 비실시간 금융광고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ICOB 3.3.2). 즉, 실시간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ICOB가 적용되지 않는다(ICOB 3.1.2). 이 점에서 COB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ICOB는 COB와 달리 직접청약부 금융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3) 준수의 확인

보험업자는 비실시간 금융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그 금융광고가 여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ICOB 3.7.1(1)). 보험업자는 그 확인 작업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COB 3.7.1(1)).

(4) 형식과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OB는 실시간 금융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며, 오직 비실시간 금융광고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ICOB 3.1.2).

비실시간 금융광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COB와 유사하다. 즉,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하고(ICOB 3.8.1(1)), 비교를 하는 경우 COB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ICOB 3.8.1(1)), 기타 일반적 기준도 COB와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ICOB 3.8.2).

ICOB는 COB와 달리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전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ICOB 3.8.3).

첫째, 의견(opinion)을 제시하는 경우, 의견의 일부만이 제시되는 때에는 그 자체가 공정한 진술이어야 하고, 의견의 진술자와 보험업자 사

이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현저한 권리(prominent claims)를 제한하기 위해서 작은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보험업자가 보험료를 제시하는 경우 소매소비자에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제시된 보험료는 유사한 위치에 있는 소매소비자에게 부과될 예상치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보험업자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가장 싼 보험료를 제공하거나 소매소비자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는 금융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하 등이 달성될 수 있는 근거가 동일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손해보험계약을 광고하면서 보험기간이 장기라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5) 직접청약부 금융광고

COB와 달리,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6) 전자금융광고

COB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ICOB 3.9).

라) 분석

금융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금융광고의 본질상 여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광고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금융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영국에서 잘 나타난다. 즉, 영국에서는 광고에 대한 일반규제기관으로서 광고표준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이 있으며, 이 기관이 제정하는 광고에 관한 규정들(codes)이 존재하지만, 금융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규제기관으로서 금융감독청(FSA)이 있으며, 이 기관이 제정한 광고에 대한 특별 규정들이 COB와 ICOB에 존재한다.

COB와 ICOB가 금융광고를 요청, 비요청, 실시간, 비실시간, 비청약부, 직접청약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비요청, 실시간 금융광고를 행해서는 안 되지만 투자생명보험은 예외로 하고 있고, ICOB가 비투자보험의 실시간 금융광고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즉, 영국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투자보험에 대한 실시간 금융광고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1) 관련 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9조는, “①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간접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②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2.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2) 분석 및 개선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에 대한 일반규제기관이며, 광고에 관한 일반법률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존재한다. 한편, 금융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규정이 극히 적다. 즉,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광고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와, 간접투자에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9조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금융에 관한 전문규제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광고에 개입할 여지도 극히 적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과

는 크게 대비된다.

금융광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법제화 하는 경우 영국이 채택한 규제 내용들은 참조할 만하다. 특히 금융광고를 요청, 비요청, 실시간, 비실시간, 비청약부, 직접청약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에서 비투자보험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간 금융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소비자를 받아들이기

가. 고객의 분류

1) 영국

가) COB

(1) 취지

COB는 고객을 전문성,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보호의 정도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간투자업(inter-professional investment business)에 대해서는 약한 방식('light touch' approach)의 영업규범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전문성이나 경제력을 고려해서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4.1.3).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 또는 이에 관한 부수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4.1.1).

(3) 내용

(가) 분류 의무 및 면책

인가업자는 지정투자업을 수행하기 전에 고객이 일반소비자(private customer), 중급소비자(intermediate customer), 시장상대방(market counterparty)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COB 4.1.4(1)). 그러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인가업자는 고객의 분류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COB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COB 4.1.4(1)).

(나) 고객이 다른 투자자의 대리인인 경우

어떤 투자자(C2)의 수임인(C1)이 인가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인가업자는 C1과 C2 중 누구를 기준으로 고객의 분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COB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 C1이 기준이 된다고 규정한다(COB 4.1.5(1)). 첫째, C1이 인가업자인 경우 C1이 기준이 된다. 둘째, 만약 C2가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인가업자가 C2에게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주 목적이 아니라면 C1이 인가업자가 아니어도 C1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업자와 C1이, C2를 기준으로 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COB 4.1.5(1)).

(다) 분류

① 종류

COB에 따르면, 고객(client)은 세 가지, 즉 일반소비자, 중급소비자, 시장상대방으로 분류된다. 소비자(customer)란 일반소비자와 중급소비

자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시장상대방의 기준

시장상대방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성질상 시장상대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고객이 인가업자 또는 해외금융기관인 경우 시장상대방에 해당한다(COB 4.1.7(1)). 하지만, 금융기관 또는 해외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다음의 C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급소비자로 분류된다.

첫째, 인가업자가 수행한 행위가 전문가간영업이고, 그 상대방인 고객(C1)은 다른 소비자(C2)를 위하여 이 행위를 한 것이며, C1을 중급소비자로 분류하기로 F와 C1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COB 4.1.7(1)).

둘째, 인가업자가 수행한 행위가 전문가간영업이 아니고, 그 상대방인 C1이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거나, C1이 자신의 투자생명보험기금(life fund)을 위하여 행위하는 생명보험업자(long term insurer)인 경우에는 중급소비자로 분류된다(COB 4.1.7(4)).

다른 하나는, 그 성질상 중급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가업자가 시장상대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이다(COB 4.1.12(1)). 이 경우, 인가업자는 고객과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시장상대방으로 분류됨을 서면 고지해야 하고, COB상의 보호를 상실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서면 경고해야 한다(COB 4.1.12(1)).

첫째,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면 1천만 파운드 이상의 자본)의 법인이다.

둘째, 지방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다.

셋째, 1천만 파운드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조합이다.

넷째, 1천만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가진 신탁의 수탁자이다.

다섯째, 가입자 50인 이상이고 1천만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연금기구(OPS) 등의 수탁자 등이다.

③ 중급소비자

시장상대방이 아닌 고객은 중급소비자 또는 일반소비자로 분류된다. 중급소비자와 일반소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충분한 경험과 이해의 존재 여부이다. 이에 따라, 인가업자는 고객이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갖는 자로서 중급소비자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데 합리적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설령 고객이 일반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객을 중급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다(COB 4.1.9(1)).

충분한 경험과 이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가업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COB 4.1.10). 첫째, 고객이 관련된 금융상품, 시장, 위험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둘째, 고객이 이러한 시장에서 활동해 온 기간, 거래의 빈도, 인가업자의 조언에 의존해 온 정도, 셋째, 이러한 시장에서 고객을 위해서 행해진 거래의 규모와 성격, 넷째, 고객의 경제적 지위로서 그의 순자산의 가치 또는 그의 운용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이다.

고객이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자로서 중급분류자로 분류되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에게 주어지는 COB상의 보호를 상실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하고, 중급소비자로 분류되는 것의 효과(implications)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서면 동의를 얻거나 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COB 4.1.9(1)). 여기서 서면 경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COB 4.1.11).

④ 일반소비자

고객이 충분한 경험과 이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소비자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시장상대방 또는 중급소비자의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COB 4.1.14).

(라) 분류에 대한 검토

인가업자는 고객을 시장상대방 또는 중급소비자로 분류한 경우, 그러한 분류가 여전히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어도 매년 검토를 해야 하며, 다만 지난 1년간 해당 고객과 해당 상품의 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를 연기할 수 있다(COB 4.1.15).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보험소비자를 전문성,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분류하고 보호의 정도를 달리한다(ICOB 1.2.5). 그 취지는 COB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또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1.2.1).

(3) 내용

(가) 분류 의무 및 면책

소비자가 소매소비자인지 기업소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업자 등은 소비자를 소매소비자로 취급하여 ICO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ICOB 1.2.6). 이것은 COB에 비해서 보험업자 등에게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COB의 경우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고객이 다른 투자자의 대리인인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류

① 종류

ICOB는 COB와 달리 고객(cli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자(customer)라는 개념만 사용하며, 소매소비자(retail customer), 도매소비자(commercial customer)로 분류한다(ICOB 1.2.5).

② 기준

소매소비자란 다음을 가리킨다(ICOB 1.7.3(1)). 즉, 자신의 거래, 영업 또는 전문직업 이외에 속하는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연인이다(any natural person who ... is acting for purposes which are outside his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수임인(personal representative), 가족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family trust), 개인용도와 영업용도를 포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예를 들면, 자동차의 운행자가 가정용과 더불어 단독상인(sole trader)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소비자란 위와 같은 소매소비자를 제외한 것이다. 기업소비자의 예로는, 첫째 주택신탁(housing trust)의 수탁자, 클럽(club)이나 기타 비법인단체의 지도부의 구성원, 연금수탁자 등이다(ICOB 1.7.3(1)(a)).

다) 분석

COB와 ICOB는 고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영업규범의 종류별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고객에게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것은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취지가 찬성할 만 하다. COB는 고객을 시장상대방, 중급소비자, 일반소비자로 분류하고, ICOB

는 기업소비자, 소매소비자로 분류한다. COB의 시장상대방과 중급소비자가 ICOB의 기업소비자에 해당하고, COB의 일반소비자와 ICOB의 소매소비자가 대체로 일치한다. ICOB가 시장상대방과 중급소비자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비투자보험의 경우 분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2항은,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적격기관투자자”라 함은 유가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로서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일반고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항이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한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고객이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권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고객은 적격기관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반고객”이라 함은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고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2항은,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격기관투자자가 정해지고, 그 나머지는 일반고객으로 된다고 규정한다. 고객을 구분하여 보호를 달리하는 정책은 유가증권거래에 한정될 이유는 없다.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융거래에 확

대하여 법제화 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이하에서도 우리나라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증권업감독규정의 2분법을 따르되, 편의상 명칭을 일반고객과 전문고객으로 정한다. 한편,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2항이 고객의 '전문성'만을 고객의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이 다른 투자자의 대리인인 경우에, 고객과 투자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고객 분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COB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영업조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소비자는 인가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기초(basis), 즉 영업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B 4.2.4).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특정한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해서 지정투자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며(COB 4.2.1), 다만 COB 4.2.9가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내용

(가) 원칙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조건(terms of business)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COB 4.2.5(1)).

만약 인가업자가 특정한 일반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행 이전에 영업조건을 교부해야 한다(COB 4.2.5(1)). 만약 인가업자가 중급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정투자업의 수행을 개시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교부해야 한다(COB 4.2.5(3)). 영업조건을 교부할 당시에 입수가 불가능한 정보는 입수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교부하면 된다(COB 4.2.6).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일정한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영업조건은 고객협정(client agreement)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COB 4.2.7(1)). 여기서 일정한 지정투자업에는, 재량적 관리투자(managing investments on a discretionary basis), 추가부담(contingent liability)이 있을 수 있는 지정투자업 등을 포함하여 4 종류가 있다(COB 4.2.7(1)). 또한,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가 영업조건을 고려할 적절한 기회를 갖도록 합리적 주의를 다한 후에 고객협정을 체결해야 한다(COB 4.2.7(1)).

(나) 예외

COB 4.2.9가 규정하는 13 종류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가업자의 영업조건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에는, 실행만의 거래(execution only transactions), 직접청약부 금융광고(direct offer financial promotion), 집합투자기구(CIS)의 운용자(operator)가 행하는 일정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생명보험업자가 본인으로서 투자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effecting a life policy issued or to be issued by it as principal)에도 영업조건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투자생명보험의 보험매개

자가 행하는 매개행위에 대해서 영업조건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포함해야 할 사항

인가업자는 지정투자업이 수행되는 기초(basis)에 해당하는 사항이 영업조건에 충분하고 상세하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COB 4.2.10). 인가업자가 충분하고 상세한 영업조건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COB가 규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했거나 인가업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COB 4.2.11(1)). 영업조건이 하나의 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개 이상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집합적으로 영업조건을 구성하고, 두 개 이상의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서 포함된 정보의 중요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중대하게 감소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COB 4.2.12).

영업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COB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6 종류이다(COB 4.2.15). 여기에는, 영업조건의 효력발생시점, 규제기관, 인가업자의 법적 지위, 고객의 투자목적, 제한사항들, 인가업자가 제공할 역무의 내용 및 종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재량적 관리투자의 경우에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5 종류가 있다(COB 4.2.16). 고객의 투자목적과 같이 영업조건을 교부할 당시에 인가업자가 알고 있을 양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COB 4.2.6).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EU지침 중 하나인 격지판매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을 규정화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8.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보험매개계약에 적용된다(ICOB 8.2.1).

(3) 내용

보험매개자는 소매소비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COB 8.3.1). 여기서 일정한 정보란 ICOB 8.3.3이 규정하는 15가지와 격지자 사이의 보험매개계약상 모든 조건을 말한다. 정보의 제공은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기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ICOB 8.3.1).

다) 분석

COB와 ICOB는 인가업자가 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영업조건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가업자가 투자의 권유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반소비자 또는 소매소비자와 접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영업조건을 제공하게 하자는 것이다. 인가업자는 자신의 법적 지위, 자신이 제공할 역무의 내용 및 종류 등에 영업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금융업의 겸업주의를 취하는 FSMA2000하에서는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인가업자 중에서, 투자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생명보험업자나, 비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비투자보험업자에게는 영업조건을 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생명보험이나 비투자보험의 판매를 매개하는 보험매개자는 영업조건을 제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투자생명보험이나 비투자보험의 권유 또는 판매는 보험매개자의 매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그러한 매개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상품고지(product disclosure) 의무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제공되어야 할 영업조건의 내용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공시기와 관련해서도 COB와 ICOB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COB나 ICOB상의 영업조건의 제공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금융업자가 고객에게 금융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 위의 영업조건보다 제한된 범위의 일정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정한 금융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과 같은 정보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금융조건의 제공의무를 법제화하면 고객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금융업의 겸업주의 채용 여부, 금융조건의 제공에 소요될 금융업자의 노력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제공 방식 면에서는, 일률적으로 서면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영업소 게시 등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권유와 판매

가.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7(인가업

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의 구입을 조언받는 일반소비자는 조언을 하는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지 여부, 또는 조언의 범위가 인가업자가 갖고 있는 영업관계(commercial relationships)의 본질 및 個數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일괄상품(준일괄상품을 포함)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 또한 인가업자가 판매그룹의 구성원(member of marketing group)인 경우에 적용된다(COB 5.1.1).

여기서 판매그룹(marketing group)이란, 일괄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단의 자들(persons)을 가리킨다. 또한, 준일괄상품(adopted packaged products)이란, 인가업자가 아닌 자(person)에 의해서 생산된 저소득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을 일반소비자에게 여기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로 공급인가업자(provider firm)가 결정한 경우에 그 지분권연금기구를 가리킨다(COB 5.1.4).

일괄상품에 대한 조언이 아닌 금융광고나, 단순집행거래(execution only transaction)에 대해서는 여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내용

(가) 개관

일괄상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지위이분법(polarisation rule)에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이를 고지해야 한다. 즉, 일괄상품

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전속대리인(tied agent)과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 중 하나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된 지위를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전속대리인은 대리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지위이분법은 1987년에 도입된 바 있고, FSMA2000에 의해서도 승계되어 있다.

지위이분법이 도입된 이유는, 첫째 조언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해서 투자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독립적 금융조언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라고 호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또는 소수의 인가업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존재해서 투자자가 혼란에 빠지고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상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 위험을 확보하고, 조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¹⁰⁾. 하지만, 이러한 지위이분법을 취하는 입법례는 드물고¹¹⁾, 영국 내에서도 전속대리인의 경우 경쟁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²⁾.

(나) 구분

일괄상품에 대해서 ‘권유’하는 자는 매개자(intermediary)에 해당한다. COB는 공급인가업자(provider firm)인 매개자와 여타 매개자로 구분한 후, 전자는 전속대리인, 후자는 독립매개자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공급인가업자란 상품공급업자(product provider) 또는 판매그룹관계자(marketing group associate)를 가리킨다. 상품제공업자란 생명보험업자(long term insurer),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규제집합투자기구(RCIS) 또는 투자신탁저축증권(ITSS)의 운용자인 인가업자를 가리

10) FSA, *Polaris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Regulation*, 2000, pp. 6~7.

11) Ibid., pp. 13~14.

12) Ibid., pp. 40~42.

킨다. 판매그룹관계자란 판매그룹의 구성원(member) 중에서 상품제공업자를 제외한 인가업자를 가리킨다.

(다) 전속대리인

제공인가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사용자(employees)나 대리인(representatives)이 일정한 일괄상품의 구입에 관해서만 조언을 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1.7(1)). 여기서 일정한 일괄상품이란, (a)자신 또는 자신의 판매그룹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생산된 일괄상품이거나, 또는 (b)준일괄상품을 말한다(COB 5.1.7(1)). 만약, 제공인가업자가 자신의 재량 하에 지정투자를 관리할 때 투자관리인(investment manager)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위의 의무가 없다(COB 5.1.7(1)).

제공인가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사용자, 대리인, 또는 소개자(introducer)가 자신이 자신의 판매그룹의 일괄상품 또는 준일괄상품을 제외한 일괄상품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일반소비자에게 믿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COB 5.1.11).

제공인가업자는, 자신의 대리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또는 자신의 판매그룹의 구성원이 생산한, 또는 준집합상품에 해당하는 집합상품을 조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대리인이 특정한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COB 5.1.12).

제공인가업자는, (a)수당(remuneration) 구조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에게 투자에 관한 부적당한 조언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b)COB 2.2.3이 규정하는 유인(inducement)의 제공에 해당하는 상황에 있는 독립매개자에게 일반소비자를 맡기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1.13).

제공인가업자는, 준일괄상품의 제조자에 의해서 책정된 비용을 초과하여 비용(charges)을 책정한 경우에, 그 초과 책정된 비용을 고지하는 제도(arrangements)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준일괄상품에 관해서 일반소

비자에게 조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COB 5.1.14).

(라) 독립매개자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는 일반소비자에게 일괄상품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COB 5.1.16(1)). 독립매개자는 자신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관계(commercial arrangements)를 다른 자들(persons)과 맺어서는 안 된다(COB 5.1.16(1)). 독립매개자는 자신의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1.16(3)).

(마) 일반 요건

인가업자는 자신이 일괄상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조언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품제공업자 또는 판매그룹의 일괄상품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상품공급업자 또는 판매그룹 그리고 자신의 판매그룹 이외의 준일괄상품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재량 하에 자산구성(portfolio)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COB 5.1.17).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COB와 마찬가지로 영업원칙 6과 영업원칙 7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EU지침 중 하나인 보험매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의 일부규정, 즉 전화에 의한 통신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실행하는 것이다(ICOB 4.1.6). 보험매개자가 상품 및 역무의 범위 및 유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COB 4.1.7(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매개자가 보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조언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ICOB 4.1.1, 4.1.3). 보험업자가 보험매개자로서 기업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COB 4.1.4(1)). 자동차보험과 같이 소비자가 속성 견적(quick quote)을 위해서 다수의 보험매개자를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속성 견적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ICOB 4.2.1(3)).

(3) 내용

(가) 제공해야 할 정보

보험매개자는 자신의 지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COB 4.2.2(1)). 여기의 일정한 정보란, 첫째 보험매개자의 명칭·주소·성문법상 법적 지위, 둘째 보험매개자가 시장에 대한 공정한 분석(fair analysis)에 기초한 조언 또는 정보, 또는 제한된 수의 보험업영위자(insurance undertaking)로부터의 조언 또는 정보, 또는 단일한 보험업영위자로부터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 셋째 민원제기절차, 넷째 보상기구 등이 포함된다(ICOB 4.2.8). 이러한 정보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기술해 놓은 것으로 초기고지서류(initial disclosure document)가 있다(ICOB 4 부칙 1 및 부칙 2 참조). 보험매개자는 자신의 지위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초기고지서류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ICOB 4.2.4).

보험매개자가 단순히 소개(introducing)만을, 즉 다른 보험매개자에게 또는 상품제공업자로서의 보험업자에게 소비자를 소개하는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ICOB 4.2.9). 즉, 첫째 보험매개자의 명칭·주소·성문법상 법적 지위, 둘째 소비자가 소

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금액, 셋째 소개자인 보험매개자와 소개를 받는 보험매개자가 동일한 그룹(group) 소속인지 여부 등이다.

(나) 수수료에 관한 정보

보험매개자는 보험매개행위에 대한 수수료(fees) 액수의 명세를 소비자가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시점과 계약체결 시점 중 빠른 것을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ICOB 4.2.15). 이러한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상관없지만 계약체결 후 즉시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ICOB 4.2.17).

(다) 제공시기

보험매개자는 투자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언제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COB 4.2.2(1)). 만약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즉각적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매개자는 계약의 체결이전에 구두로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의 체결후 즉시 보전적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다(ICOB 4.2.2(1)(4)). 또한 전화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이 명시적 동의를 한다면, 보험매개자는 자신의 명칭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전체 정보는 계약의 체결 후 즉시 보전적 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ICOB 4.2.2(3)(4)).

다) 분석

COB는 생명보험을 포함하는 일괄상품 또는 준일괄상품의 거래권유와 관련해서 인가업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상품 등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지위이분법(polarisation rule)에 따라서 법적 지위, 즉 전속대리인 또는 독립매개자 중에서 배타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가업자는 영업조건(terms of business)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법적 지위의 고지의

무는 일괄상품 등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지위이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ICOB는 보험매개자가 일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89조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매개자들에게 지위이분법이 적용된다. 즉, 보험

매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9조 제2항 제2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 전속대리인(tied agent)에 해당하고, 보험중개사는 독립매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COB와 같이 법적 지위를 고지할 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한편, 지위이분법을 다른 금융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경쟁제한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지위이분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ICOB처럼, 금융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업자에게 기속되어 금융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일반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나.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의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9(인가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리가 있는 금융고객을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에 관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자신의 조언이나 재량적 결정이 적합성을 띠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반소비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2.4).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5.2.1). 첫째, 일반소비자에 대해서 지정투자업에 대한 개인적 권유(personal

recommendation)를 하는 인가업자이다. 둘째, 일반소비자에 대한 투자 관리인(investment manager)으로 행위하는 인가업자이다. 셋째, 일반소비자를 위해서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로부터의 연금해지(pension opt out) 또는 연금양도를 중개하는 인가업자이다.

(3) 내용

인가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의무에 관련하여 해당 일반소비자에 관한 개인적, 재정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COB 5.2.5). 만약 인가업자가 계속적으로 의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또한 정기적 검토를 해야만 한다(COB 5.2.6). 만약 해당 일반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인가업자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제공할 의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즉각적 경고를 한 후에만 의무의 제공을 진행할 수 있다(COB 5.2.7).

인가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일반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COB 5.2.8). 인가업자가 정보를 수취하는 과정에 관한 지침은 COB 5.2.11이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우애조합투자생명보험증권(friendly Society life policy)에 관한 특별내용이 있다. 즉, 그러한 보험이면서 보험료가 연간 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주당 1파운드인 경우에는 해당 일반소비자(그의 부양자 포함)의 순수입 및 순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얻어야 하고, 권유된 거래가 해당 일반소비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나) ICOB

(1) 취지

이 규정도 COB와 마찬가지로 적합성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 소비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매개자가 보험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조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ICOB 4.1.1, 4.1.3). 보험매개자로서의 보험업자가 기업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권유를 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ICOB 4.4.2(1)(a)).

(3) 내용

보험매개자는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demands and needs)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ICOB 4.3.2). 즉, 소비자의 환경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권유한 보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예를 들면 기존 보험에 관한 사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보험매개자가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소비자에 관한 관련 명세도 얻어야 한다.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비롯한 모든 인가업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적합성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는 필요하다. COB와 ICOB는 투자별 특성을 고려해서 수집할 정보의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는, “③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편에서 “고객정보”라 한다)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증권회사가 파악한 고객정보를 고객의 서면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1. 고객의 재무상황
2. 고객의 소득상황
3. 고객의 투자목적
4. 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
5. 고객의 투자경험 및 지식
6.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MMF, 국공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유가증권만을 거래하는 고객

2.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당해 증권회사에 표시한 경우 그 고객

3. 당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 다만, 당해 고객이 그 고객정보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3항이 해당 일반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동규정 동조 제2항이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데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도 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적합성의 원칙이 모든 금융

거래에 확대 적용된다면, 그에 따라서 금융업자의 정보수집 의무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내용은 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COB와 I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적합성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9(인가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리가 있는 금융고객을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취해야 하는 합당한 조치는, 일반소비자의 수요 및 우선순위, 제공되는 거래 또는 역무의 유형, 인가업자와 일반소비자의 관계, 그리고 인가업자가 개인적 권유(personal recommendation)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량적 거래관리인(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으로서 행위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COB 5.3.4).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5.3.1). 첫째, 일반소비자에 대해서 지정투자에 관한 개인적 권유(personal recommendation)를 하는 인가업자이다. 둘째, 일반소비자에 대한 투자관리인(investment manager)으로 행위하는 인가업자이다. 셋째, 기업연금기구(OPS) 또는 저소득층국민연금(SPS)의 자산을 관리하는 인가업자이다. 넷째, 일단의 피용자들에 대해서 직접청약부금융광고의 형식을 통

해 개인연금을 광고하는 인가업자이다.

(3) 내용

(가) 일반 요건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지정투자업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권유를 하거나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한 재량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반소비자에 관해서 자신에게 고지된 사실 및 인가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에 비추어 권유 또는 거래가 해당 일반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3.5(1)). 또한,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를 위한 거래관리인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반소비자에 관해서 자신에게 고지된 사실 및 인가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에 비추어 일반소비자의 자산구성 또는 계정이 적합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3.5(1)). 또한, 인가업자가 공동적, 재량적 관리 결정을 할 목적으로 개인소비자의 동의 하에 그의 자금과 타인의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재량적 거래가 그 자금의 명기된 거래목적에 비추어 적합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3.5(1)).

(나) 특별 요건

COB는 적합성의 구체적 기준이 인가업자, 금융업무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가업자, 금융업무별 특별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a)공급인가업자(provider firm)가 일반소비자에게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을 구입하도록 개인적 권유를 하는 경우(COB 5.3.6), (b)독립매개자가 일반소비자가 일괄상품을 구입하도록 개인적 권유를 하는 경우(COB 5.3.9), (c)인가업자가 기업연금기구(OPS) 또는 저소득층 국민연금(SPS)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COB 5.3.12), (d)일반소비자를 위해서 브로커펀드조언자(broker fund adviser)로서 행위하는 경우(COB 5.3.20), (e)비전문가가 인가업자를 대신해서 연금 양도 또는 해지

(opt-out)에 관한 개인적 권유를 하는 경우(COB 5.3.21), (f)인가업자가 일단의 피용자들에 대해서 직접청약부금융광고의 형식을 통해 개인연금을 광고하는 경우(COB 5.3.28) 등을 구분하여 적합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a)제공인가업자(provider firm)가 일반소비자에게 일괄상품을 구입하도록 개인적 권유를 하는 경우, 첫째 권유된 일괄상품이 해당 판매그룹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일괄상품과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준일괄상품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고, 둘째 만약 그러한 상품이 없다면 권유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3.6).

(b)독립매개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특정 일괄상품을 구입할 것을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만약 독립매개자가 소비자의 수요 및 환경에 보다 적합한 일괄상품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했던 경우에 금지된다(COB 5.3.9(1)).

(다) 적합성 통지

인가업자는 일정한 경우 적합성 통지(suitability letter)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반소비자에게 보내야 한다(COB 5.3.14). 일정한 경우란, 개인소비자가 인가업자의 개인적 권유에 따라서 (a)투자생명보험, 연금계약 또는 저소득층국민연금(SPS)를 구입하거나, 판매하거나, 해지하거나, 승환하거나(convert), 취소하거나, 또는 보험료 또는 기여분(contributions)을 일시 중지하거나, (b)수입철회(income withdrawals)를하기로 선택하거나, (c)기구(scheme)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또는 (d)기업연금(OPS)로부터 연금의 양도 또는 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적합성 통지는, 인가업자가 해당 일반소비자의 개인적,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거래가 그에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거래의 주요 결과와 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요약은 포함해야 한다(COB 5.3.16(1)(1)).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9에 관한 것이다. 보험업자는 자신의 조언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ICOB 4.1.6).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매개자가 보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조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ICOB 4.1.1, 4.1.3).

(3) 내용

(가) 적합성의 내용 및 기준

보험매개자는 보험매개행위 중에 소비자에게 보험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권유할 때, 해당 권유가 권유 당시의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demands and needs)에 적합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ICOB 4.3.1(1)).

보험매개자는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ICOB 4.3.2). 첫째 소비자의 환경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권유한 보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예를 들면 기존 보험에 관한 사실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보험매개자가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소비자에 관한 관련 명세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험에 중요한 모든 상황을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가 고지하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ICOB 4.3.1(1)의 권유는 앞서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험매개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역무범위(scope of service)¹³⁾

에 기초해야 한다(ICOB 4.3.1(1)).

다만 보험매개자가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 '전체'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을 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ICOB 4.3.1(3)). 즉, 보험매개자의 역무범위 내에서는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 전체에 부합하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보험매개자가 권유 당시에 해당 보험이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 전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경우이다.

적합성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일정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ICOB 4.3.6). 첫째, 보장의 수준이 소비자가 담보하기를 원하는 위험에 비추어 충분하지 여부, 둘째 계약의 비용(이것이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셋째 계약상 배제, 조건 등의 적절성 등이다.

보험매개자가 소비자의 기존 보험이 자신이 행한 개인적 권유의 적합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해당 기존 보험의 명세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는 한 개인적 권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소비자의 기존 보험의 명세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권유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적 권유를 해야 한다(ICOB 4.3.5).

(나) 요구수요기록표

보험매개자가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증명한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에 요구수요기록표(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를 제공해야 한다(ICOB 4.4.1(1)). 여기에는, 첫째 소비자의 요구 및 필요가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보험매개자가 그 계약을 개인적 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셋째 개인적 권유가 행해진 경우 해당 계약을 개인적으로 권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공은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

13) 이에 대해서는 ICOB 4.2.8(6)이 규정하고 있음.

척이며, 다만 소비자가 구두 제공을 요청하거나 즉각적 보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직후에 보전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면 된다(ICOB 4.4.1(3)(4)).

하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보험매개자로서의 보험업자가 기업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권유를 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ICOB 4.4.2(1)(a)). 둘째, 보험매개자로서의 보험업자가 기업소비자에게 개인적 권유를 하는 경우에, 기업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동意的 효과에 대해서 기업소비자에게 설명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ICOB 4.4.2(1)(b)). 셋째, 소비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요구수요기록표가 계약 체결 직후에 보전적 수단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계약의 체결 이전에 구두로 제공되어야 한다(ICOB 4.4.2(1)). 속성 견적(quick quote)에 대해서는 제공의무가 없다(ICOB 4.4.3(1)).

다) 분석

COB와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업자를 비롯한 모든 인가업자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소비자를 위한 재량적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COB와 ICOB는 투자생명보험과 비투자보험을 포함하여 투자별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는, “②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대상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유가증권 투자내역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게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는, “①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2항은,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5조는 판매회사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한다.

적합성 원칙의 적용이 증권회사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등에만 한정될 이유는 없다. 모든 금융업자에게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의 구체적 기준은 COB와 ICOB상의 투자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라. 위험에 대한 이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9(인가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리가 있는 금융고객을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재

량적 결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거래에 내재한 위험의 특성을 개인소비자가 이해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4.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지정 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5.4.1).

(3) 내용

(가) 일반 요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가 관련위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a)거래에 대한 개인적 권유를 하거나, (b)재량적 거래관리인으로서 행위하거나, (c)워런트(warrant) 또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집행하거나, 또는 (d)환매조건부매도(stock lending)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COB 5.4.3).

(나) 특별 요건

워런트나 파생상품, 즉시 실현하기 곤란한 투자(non readily realisable investments), 즉시유동화주권(penny shares), 안정화증권, 환부조건부매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COB 5.4.4~5.4.10). 예를 들면, 일정한 워런트나 파생상품의 경우 인가업자는 위험을 통지해야 하고 일반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수령을 인정하고 그 내용의 수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COB 5.4.6(1)).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해당 위험을 이해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일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이다.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거래위험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ICOB가 이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8은, “증권회사가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거래의 상대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2항은, “령 제84조의28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3.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외국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자를 포함한다)
6.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7.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9.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이행을 보증한 자회사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는, "⑤ 증권회사는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고객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향후 상장 또는 등록이 확정되지 아니한 주식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감리대상·관리대상 또는 투자유의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권

4. 신용거래 및 고객예탁재산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유가증권거래

5. 주가지수선물 · 주가지수옵션 및 이에 준하는 파생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한다.

선물거래법 제43조는, "① 선물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선물거래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및 이에 따른 추가부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7조는, "②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이 주가지수선물 · 옵션거래등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큰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거래의 절차와 구조 및 성격
2. 해당거래의 위험성
3. 해당거래관련 통지의 내용 및 방법
4. 기타 고객과 증권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객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는, "②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개념 및 방법
2.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3.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8,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일정한 전문고객을 제외한 고객을 상대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러한 고객은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금지의 방법을 통하여 거래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는, 증권회사가 일정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유가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고객은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유금지의 방법을 통하여 거래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선물거래법 제43조는, 선물업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서 선물거래의 위험을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7조는,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이 장내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위험성을 설명한 후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상의 규정은 일반고객을 거래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거래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기타 위험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보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러한 위험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금융업자에 대해서 확대하여 법제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권 이외의 위험상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ICOB와 마찬가지로,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 인가업자에 대한 정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자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5.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5.5.1(1)). 금융광고를 전달하거나 승인하는 인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COB 5.5.1(1)).

(3) 내용

(가) 일반 요건

인가업자는 지정투자업을 수행할 때 일반소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COB 5.5.3). 일정한 사항에는 인가업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영업소의 주소, 일반소비자가 접촉하는 피용자 및 다른 대리인의 신분, 지위 또는 인가업자와의 관계, 인가업자의 법적 지위 등이 있다. 다만, 일반소비자가 이전에 그러한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가 현재에도 유효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나) 특별 요건

제공인가업자(provider firm)나 피용자, 대리인 등과 관련해서 추가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COB 5.5.5).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자신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합리적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일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ICOB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인가업자에 관한 정보가 비투자보험에 관한 보험업자, 보험매개자가 부담하는 법적 지위의 고지의무, 상품고지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4조는, “③ 법 제56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개요”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95조는,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상호나 명칭”이라고 규정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4조, 보험업법 제95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는, 해당 금융업자가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자신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금융업자에게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은 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바. 과도한 수수료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excessive)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6.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중, 또는 지정투자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5.6.1).

(3) 내용

인가업자는 지정투자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OB 5.6.3).

수수료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가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첫째 해당 의무 또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시장의 유사한 역

무 또는 상품의 수수료와 비교, 둘째 일반소비자의 인가업자에 대한 신뢰가 수수료로 인해서 남용된 정도, 셋째 일반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고지의 본질 및 특성 등이다(ICOB 4.5.2).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에 관한 것이다. 보험매개자가 자신의 소매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4.5.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매개자가 소매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ICOB 4.5.1). 수수료에 적용될 뿐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COB 4.5.4).

(3) 내용

보험매개자는 소매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ICOB 4.5.1).

수수료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험매개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COB와 동일하다. 즉, 첫째 해당 의무 또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시장의 유사한 의무 또는 상품의 수수료와 비교, 둘째 소매소비자의 보험매개자에 대한 신뢰가 수수료로 인해서 남용된 정도, 셋째 소매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고지의 본질 및 특성 등이다(COB 5.6.4).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

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ICOB에 따르면, 보험매개자가 소매소비자와 보험매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소비자(소매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2.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고객간 수수료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COB나 ICOB와 같은 과도한 수수료의 금지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민사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의 방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수수료의 금지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수수료에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ICOB 규정은 특기할 만하다.

사. 수수료 등의 고지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역무에 따른 비용을 알게 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informed choices)을 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5.7.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5.7.1).

(3) 내용

(가) 일반 요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기 전에, 그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기초(basis) 또는 금액, 그리고 그 영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관계자(associate)가 수령할 기타 수입의 정채 또는 금액을 일반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만 한다(COB 5.7.3(1)).

지정투자업이 집행만의 거래(execution only transaction)로서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의 서면고지가 거래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거래가 집행되기 전에 구두로 고지하고 집행 후 5 거래일 이내에 일반소비자에게 고지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을 제공하면 된다(COB 5.7.3(1)).

(나) 특별 요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투자생명보험의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가업자는 일정한 수당(remuneration or commission)을 일반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COB 5.7.5(1)). 일정한 수당이란, 첫째 해당 인가업자가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관계자(associate)가 자신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당, 둘째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령할 수당 등이다.

투자생명보험 이외의 기타 일괄상품과 관련해서는 투자생명보험의 거래와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지만, 고지 주체가 독립매개자 또는 상품공급업자(product provider)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OB 5.7.5(1)).

거래와 관련하여 피용자 및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혜택 및 편의 등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함으로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COB 5.7.6). 그러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공인가업자(provider firm)가 준수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는 COB 5.7.16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COB 5.7.8).

나) ICOB

(1) 취지

이 규정도 영업원칙 7에 관한 것이다. 보험매개자가 자신의 기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 알리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4.6.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매개자가 기업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ICOB 4.6.1). 보험업자가 보험매개자로서 기업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권유를 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ICOB 4.1.4(3)).

(3) 내용

기업소비자를 위해서 보험매개행위를 수행한 보험매개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또는 언제라도, 기업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신 또는 자신의 관계자(associate)가 수령하는 수당을 현금 기준으로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고지해야 한다(ICOB 4.6.1). 만약 수당의 정확한 가치가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 보험매개자는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율(rate)을 평가해야 한다(ICOB 4.6.5).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ICOB에 따르면, 보험매개자가 소매소비자와 보험매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소비자(소매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런데, 비투자보험의 경우 소매소비자와 거래하는 보험매개자는 수수료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입법 이유는, 첫째 비투자보험의 보험료는 투명하고(transparent), 둘째 일정한 유형의 비투자보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교견적(shopping around)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부실한 보험상품을 찾아서 배척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⁴⁾. 다만, 금융감독청은 향후 필요한 경우 소매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¹⁵⁾.

2) 우리나라

14) FSA, Insurance Selling and Administration & Other Miscellaneous Amendments, Consultation Paper 187, 2003, p. 40.

15) Ibid.

가) 관련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54조는, “③ 법 제56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라고 규정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는, “① 금융기관은 저축상품의 거래조건을 공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수료”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31조는, “① 증권회사는 수수료 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거래개시 전에 고객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8조는, “①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수수료, 체세금의 내용등(이하 “매매성립내용”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고객(고객이 매매거래통지에 관하여 지정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9조에서 같다)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매매성립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요구시 매매성립내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는, “⑦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행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92조는,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는, “①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④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 제54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 증권업감독규정 제4~31조, 제4~18조 등에 의해서 수수료 공시의무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공시의 방법이나 절차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의 비교·공

시 의무를, 보험업법 제92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1조는 보험중개사의 수수료 비치의무 및 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한다.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수수료 공시 및 고지를 모든 금융업자에게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과 관련해서는 ICOB가 고려한 보험의 특수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 요청되지 않은 역무

1) 영국

가) 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ICOB

(1) 취지

이 규정은 EU지침 중 하나인 격지판매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에 존재하는 '요청되지 않은 역무'(unsolicited services)를 국내 법으로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다(ICOB 8.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보험매개(distance non investment mediation contract)와 관련하여 보험매개자 또는 보험자에게 적용된다(ICOB 4.7.1, 8.1.1).

(3) 내용

보험매개자 또는 보험업자는 격지자 사이의 매개계약과 관련해서,

소매소비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요청을 포함하는 조언을 하거나, 중개하거나, 체결을 하거나, 그 관리 또는 집행을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없으며, 또한 사전 요청을 받지 않고 그러한 역무를 수행한 경우에 추인이 없는 한 소매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ICOB 4.7.1, 8.4.1).

다) 분석

ICOB에 따르면, 비투자보험의 보험업자 또는 보험매개자는 소매소비자와 격지자 사이인 경우에는 소매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조언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험업자 또는 보험매개자가 대화자로서 행위하고 상대방인 소매소비자는 거절을 원하는 경우 용이하게 거절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격지자 사이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소매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다른 지정투자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ICOB를 참조해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상품고지 등

가. 상품고지

1) 영국

가) COB

(1) 취지

여기의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일정한 지정투자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6.1.3).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6.1.1).

첫째, 일반소비자, 기업연금기구(OPS)의 수탁자, 또는 저소득층국민연금(SPS)의 수탁자나 운용자에게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 또는 중개하는 인가업자;

둘째,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현금예금의 개인저축계정(ISA)을 관리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인가업자;

셋째,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투자생명보험의 변경(variation)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권유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인가업자;

넷째,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수입철회(income withdrawals)를 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권유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인가업자;

다섯째, 투자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견적 제시를 일반소비자로부터 요청받았거나, 또는 일반소비자가 투자생명보험의 해지를 원한다는 여타 표시를 받은 생명보험업자(long term insurer); 또는

여섯째, 개인연금, 증권연금, 자유추가임의기여계약(free standing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 contract), 퇴직연금계약(retirement annuity contract)(공개시장옵션(open market option)이 계약조건상 허용되는 경우), 연금구매계약(pension buy out contract)(공개시장옵션(open market option)이 계약조건상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공하면서 만기 시 건적의 제시를 일반소비자로부터 요청받은 인가업자.

첫째의 일괄상품에 투자생명보험이 포함되므로, 투자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 또는 중개하는 인가업자는 상품고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내용

이상의 경우에 인가업자는 상품(product)의 주요 특징(key features)을 서면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하는 주요 특징의 내용, 제공 시기 등은 상품별로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COB 6.2~6.5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투자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투자생명보험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권유하거나 또는 판매를 중개하는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가 청약을 완료하기 전에 적절한 주요 특징을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COB 6.2.7). 주요 특징이 이미 일반소비자에게 제공되었고 제안된 계약조건이 그 이후에 그리고 청약이 완료되기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업자가 변경된 주요 특징을 제공받도록 해야만 한다; 다만 첫째 보험료가 변경되거나, 둘째 지급할 수수료가 감소되거나, 셋째 추가 혜택이 더해지거나 제거되거나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COB 6.2.12).

나) ICOB

(1) 취지

이 규정도 COB와 마찬가지로 영업원칙 7을 구체화 한 것이다. 소비

자가 보험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정보에 기초한 선택(informed choice)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5.1.9).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업자, 소개(introducing)를 제외한 기타 매개(mediation)업무를 수행하는 보험매개자 및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게 적용된다(ICOB 5.1.1). 다만, 이 장의 주요 적용 대상은 보험매개자이다.

보험업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첫째, 보험업자가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비투자보험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매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매개자로 취급된다(ICOB 5.1.3). 둘째, 보험업자가 이 규정에 의해서 보험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같이 분담하기로 보험매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험매개자에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ICOB 5.2.11).

(3) 내용

(가) 개관

소매소비자, 기업소비자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를 달리한다(ICOB 5.1.6). 기업소비자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ICOB 5.4.8). 비격지자 사이, 격지자 사이에 따라서도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 계약의 갱신(renewal), 계약기간 중 변화(mid term changes)를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만약 보험매개자가 소매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업자는 보험매개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이전에 정보를 작성해야 하거나 보험매개자의 요청에 따라서 즉시 작성해야 한다(ICOB 5.2.12).

(나) 소매소비자에 대한 고지

① 비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 이전

보험매개자는 비격지자로서의 계약(contract that is not a distance contract)이 체결되기 상당한 시간(good time) 이전에 두 가지 종류의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ICOB 5.3.1).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ICOB 5.2.13).

첫째, 소매소비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보험약관요약(policy summary), 가격 명세, EU지침 중 하나인 제3차손해보험지침(Third Non Life Directive)이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 22가지 등이 있다. 보험약관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ICOB 5.5.5가 규정하고 있다. 보험매개자는 보험약관요약을 제공하는 대신에, COB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주요 특징(key features)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ICOB 5.5.4).

둘째, 보험약관요약을 읽는 것의 중요성, 특히 중요하고 비통상적인 배제나 제한 조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매소비자의 주의를 구두로 환기시켜야 한다.

② 비격지자 사이의 계약체결이 성립된 때

보험매개자는 비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이 성립된 때에 그 즉시 보전적 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COB 5.3.4). 이 정보에는, 첫째 보험약관서류(policy document), 둘째 보험금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셋째 취소권에 관한 정보(적용이 있는 경우에만), 넷째 보험약관요약에 기술된 보상기구(compensation scheme), 보장의 정도 및 수준, 보험약관요약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보험약관서류에는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ICOB 5.5.27).

③ 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 이전

보험매개자는 격지자로서의 계약(contract that is not a distance contract)체결이 되기 상당한 시간(good time) 이전에 소매소비자에게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을 통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ICOB 5.3.6(1)). 이 정보에는 보험약관요약, 가격 명세, 제3손해보험지침(Third Non Life Directive)이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 22가지, 보험약관서류, 보험금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취소권에 관한 정보(적용이 있는 경우에만) 등이 포함된다. 비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과 비교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전체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다만 주의환기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보전적 통화수단이 아닌 전화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ICOB 5.3.6(1)).

첫째, 계약이 전화를 통하여 체결되고 소매소비자가 다음의 일정한 정보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구두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일정한 정보에는 보험업자의 명칭, 보험의 유형 및 보장, 중요 특징 및 혜택, 중요하고 비통상적인 배제나 제한, 소매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전체 가격, 기타 세금 및 비용의 존재 가능성, 취소권에 관한 내용(적용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청구를 통지할 전화번호 및 주소, 요청시 추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등 9가지가 포함된다.

둘째, 전화를 제외한 기타 비보전적 수단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9가지 정보 중 마지막에 있는 요청시 추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정보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이 성립된 때

만약 ICOB 5.3.6(1)상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 보험매개자는 계약 체결이 성립된 때에 그 즉시 보전적 수단을 통해서 ICOB 5.3.6(1)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ICOB 5.3.8).

(다) 기업소비자에 대한 고지

① 계약체결 이전

보험매개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일정한 정보를 기업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ICOB 5.4.1). 여기에서 일정한 정보에는, 첫째 기업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관해서 정보에 기초한 결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 둘째 EU지침 중 하나인 제3차손해보험지침(Third Non Life Directive)이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 22가지 중 일부, 셋째 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위 EU지침이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는 전화를 통하여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이 성립된 때

위 EU지침이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 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에 관한 정보가 계약체결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ICOB 5.4.4).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을 행한다면 소비자에게 영업 조건(terms of business)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소비자에게는 지정투자업의 수행 개시 이전에, 중급소비자에게는 수행의 개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일반소비자는 자신의 지정투자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게 된다. 이에 부가하여, 일정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서 상품의 주요 특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자생명보험을 비롯한 일괄상품이 포함되는 것이다. 상품고지는 영업조건과 달리 주로 일반소비자를 보호대상을 한다. 고지의 내용, 시기는 금융상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투자생명보험의 경우를 보면, 보험 특유의 내용이 고지될 것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기를 일반소비자가 청약을 완료하기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COB에는 영업조건에 교부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ICOB는 COB상의 영업조건을 상품고지에 포함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공 받는 정보의 내용은 양자가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한편 다른 면에서 다수의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ICOB는 상품고지가 금융거래의 수행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체결이 되기 상당한 시간 이전에 또는 계약체결이 되자마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해석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청약하기 이전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금융거래의 수행 이전, 예를 들면 보험가입의 권유 또는 중개 행위를 행하기 이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둘째, COB는 좁은 의미의 상품고지와 관련해서 일반소비자만 보호하지만, ICOB는 소매소비자, 기업소비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면서도 기업소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셋째, ICOB는 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과 비격지자로서의 계약체결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COB에 비해서 보다 정교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넷째, ICOB는 보전적(durable) 수단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는데, 이것도 COB에 비해서 보다 정교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는, “②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제1항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개념 및 방법
2.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3.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투자설명서의 제공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95조는,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상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1조는, “① 증권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영위하는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일반고객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거래대상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 등 관련자료를 거래 개시 전에 고객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한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는,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때 일정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95조는,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보험안내자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4~21조는, 증권회사가 일정한 파생금융상품을 일반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등을 거래 개시 전에 교부할 것을 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할 때 약관 등을 교부할 것을 규정한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고, 또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이상에서 보면 금융업자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방법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만이 거래의 권유 단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고객에게 교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이 담겨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그러한 보험안내자료의 사용이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증권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거래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담은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설명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래권유시 또는 거래성사시(계약체결시) 정보제공의무가 일부 금융업자 또는 일부 금융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거래권유시에는

거래성사시보다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어도 될 것이다. 거래성사시는 거래가 성립되기 직전에 제공되고 그 주요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예상수익률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고객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일정한 투자의 예상수익률(projection)을 제시하는 경우에 일정한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6.6.2). 예상수익률을 일정하고 일관적인 투자수익률에 기초하여 제시하게 함으로써, 인가업자가 미래수익의 잠재가치에 관하여 완전히 투기적인 예측에 기초하여 경쟁하려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생명보험, 기구(schemes), 저소득층국민연금(SPS) 등과 관련하여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6.6.1).

(3) 내용

인가업자는 예상수익률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되고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투자생명보험, 기구, 저소득층국민연금 등에 대한 예상수익률

을 제공할 수 없다(COB 6.6.4). 다만, 수익이 고정되어 있고 미래 투자 수익률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않다(COB 6.6.5).

고변동성펀드(higher volatility fund)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 수익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COB 6.6.6).

인가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률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 지고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하며, 다만 청약에 그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COB 6.6.19).

예상수익률을 계산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고려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COB 6.6.20~6.6.53).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투자생명보험업자 등 일부 인가업자는 예상수익율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는 예상수익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ICOB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는,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보험업법 제95조는 예상수익율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예상수익율의 제공이 방치되면 고객의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제95조는 적절한 입법이다. 다만 예상수익율 제공에 대한 규제는 여타 금융업 중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예상수익율 제공의 기준에 대해서는 COB, I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해제 및 철회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금융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기간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경우에는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COB 6.7.6).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6.7.1). 즉, (a)상품제공업자(product provider), (b)순수보장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업자, (c)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의 관리인, 개인저축계정 (ISA)의 관리인 또는 계획관리인(Plan Manager)으로서 행위하거나, 또는 인가업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구입하거나 환매한 소비자유닛

(customer units)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 (d)개인저축계정 관리인으로 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인가업자의 현금예금 개인저축계정과 관련해서 예금을 보관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인가업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 해당 예금수취 인가업자, (5)저소득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의 운용자 등이다.

(3) 내용

(가) 해제권 및 철회권

개인(individual)인 소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제할(cancel) 수 있다(COB 6.7.7). 또한 개인인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할(withdraw) 수 있다(COB 6.7.14). 현존하는 계약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COB 6.7.23).

(나) 허용되는 경우

해제권 및 철회권은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된다. COB 6.7.5는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COB 6.7.1이 규정하는 것 중 일정한 것은 인가업자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되고, 그 나머지는 인가업자의 권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개인연금, 현금예금 개인저축계정(ISA), 투자생명보험, 예금계약, 순수보장보험, 증권저축, 그리고 현존하는 투자생명보험·연금계약·지분권자연금 등에 대한 일정한 변경 등이 있다.

둘째, 해제권과 철회권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만 인정되기도 한다. 또한 최대 숙고기간(period of reflection)도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개인연금, 현금예금 개인저축계정, 순수보장보험은 해제권은 허용되지만 철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와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는 해제권과 철회권 모두가 허용된다. 한편, 순수보장보험의 경우는 해제권이 허용하지만 철회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최대 숙고기간은 대개 14일에서 30일이며, 생명보험과 순수보장보험의 경우는 14일이다.

기타 제한에 대해서는 COB 6.7.15~6.7.20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생명보험이라도 만약 보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COB 6.7.15).

(다) 해제권의 통지

소비자와 거래를 체결한 인가업자는 해제권이 있음을 분명하고 눈에 띄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계약전 통지),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계약후 통지) 이루어져야 한다(COB 6.7.30).

통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COB 6.7.32~6.7.40).

만약 인가업자가 계약후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 후 2년 이내에 언제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장손실(shortfall)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COB 6.7.41). 해제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인가업자는 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COB 6.7.47).

(라) 시장손실의 징수

계약 후 통지를 제대로 이행한 인가업자는 계약이후 해제당시까지 발생한 시장손실(market loss 또는 shortfall)을 제외한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COB 6.7.54).

나) ICOB

(1) 취지

이 규정도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매소비자가 자신의 거래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기간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경우에는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다(ICOB 6.1.11).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험계약에 적용된다(ICOB 6.1.4). 다만, 다수의 예외가 있다(ICOB 6.1.5). 첫째, 보험기간이 1월 미만인 여행·수하물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험, 둘째 소매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해당 보험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셋째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서 비격지자 계약인 순수보장보험, 넷째 기업연금(OPS)의 수탁자 등에 의해서 체결된 순수보장보험 등 6가지가 있다.

이 장은 격지자 사이의 보험매개계약(distance non investment mediation contract)에도 적용된다(ICOB 8.5.1).

(3) 내용

(가) 해제권

소매소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해제할(cancel) 수 있다(ICOB 6.2.1). 청약의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순수보장보험의 경우에는 30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4일이다(ICOB 6.2.2). 만약 인가업자가 보전적 수단을 통해서 해제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매소비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ICOB 6.2.9).

(나) 보험료 등의 반환

보험업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매소비자가 지급한 보험료 및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ICOB 6.4.3(1)).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업자가 이미 실제로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 소매소비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ICOB 6.4.3(1)).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숙고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투자에 대해서 청약권 또는(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투자생명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ICOB는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도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비투자보험에 대해서 해제권 등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③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고 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

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조).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해제, 철회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후 해제의 경우 일반고객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COB 및 I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라. 보험계약의 정보제공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에 관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순수보장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생명보험계약이나 순수보장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일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6.8.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순수보장보험계약, 투자생명보험계약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6.8.1).

(3) 내용

(가) 순수보장보험, 투자생명보험

인가업자는 순수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OB 6.5.49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COB 6.8.3). COB 6.5.49가 규정하는 정보는 EU지침 중 하나인 제3차생명보험지침(Third Life Directive) 부칙 II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정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보험업자의 명칭 및 법적 지위, 보장의 정의, 보험기간, 보험의 종료 수단, 보험료 지불수단 및 보험료기간 등 1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인가업자는 순수보장보험계약 또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COB 6.5.49가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이후에 변동이 생기기 이전에 그 변동의 효과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COB 6.8.7).

(나) 손해보험

인가업자는 개인(individual)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민원제기절차의 구체적 내용, 민원구제기관의 존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원구제기관이 존

재해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포함되어야 한다(COB 6.8.12(1)). 또한, 인가업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COB 6.8.12(1)).

자동차책임보험의 보험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COB 6.8.19~6.8.29).

(다) 제공방식

인가업자는 상기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COB 6.8.15). 만약 계약이 전화를 통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인가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두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체결된 후 5거래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ICOB

ICOB는 순수보장보험과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광의의 상품고지(product disclosure)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ICOB는 그 적용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영국 내의 인가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상품고지 의무에 관한 ICOB 규정은,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위험국가(the State of risk)가 영국이어야 하고, 순수보장보험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중심 거소가 영국이어야만 적용된다. 적어도 ICOB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장의 COB 규정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ICOB에 따르면, 보다 광범위한 상품고지 의무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없다.

마. 배당부보험계약의 정보제공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7(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배당부투자생명보험(with profits policies)의 보험계약자가 배당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6.9.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배당부투자생명보험의 생명보험업자(long term insurer)에게 적용된다(COB 6.9.1).

(3) 내용

인가업자는 배당부투자생명보험의 배당지침(with profits guide)을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배당지침의 산출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는 COB 6.9.4, 6.9.6, 6.9.7 등이 규정한다. 인가업자가 배당지침의 사본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무료로 최근본(latest version)을 제공해야 한다(COB 6.9.5).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생명보험업자는 배당부투자생명보험의 배당지침을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거래 및 관리

가. 이익상충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자신과 자신의 소비자(customer) 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익상충을 가지게 된 경우, 각 소비자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due regard)를 다해야 하고,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때에 적용된다(COB 7.1.1).

(3) 내용

(가) 이익상충의 상황 및 합리적 조치 의무

인가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알면서(knowingly) 조언하거나 또는 재량을 발휘하는 형태로 거래할(deal)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가업자가, (a)소비자와, 또는 소비자를 위하여 체결한 거래에 중요한(material) 이익, (b)위 거래에 대한 이익상충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관계, (c)인가업자의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수 있는 거래에 이익, 또는 (d)어떠한 거래에 대해서 상충하는 이익 등을 가진 소비자를 갖고 있거나 또는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COB 7.1.3).

(나) 합리적 조치의 내용

인가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소비자에 대해서 이익을 고지하기, 둘째, 독립성의 원칙(a policy of independence)에 따르기, 셋째 내부적 장치로서 차단벽(chinese walls)을 마련하기, 넷째 소비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을 거절하기 등이다(COB 7.1.4).

첫째, 소비자에 대해서 이익상충을 고지하는 경우의 예로는, (a)인가업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 (b)둘 이상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 (c)인가업자의 소비자 중 하나가 매수 또는 매도 지시를 내린 투자를 매수 또는 매수하는 권유를 하는 경우, (d)인가업자가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유를 하는 경우, (e)브로커펀드조언자(broker fund adviser)로서 행위

하는 경우 등이다(COB 7.1.5). 인가업자는 이익을 고지함에 있어서, (a) 모든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상충에 대해서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b) 소비자가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상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한다(COB 7.1.6(1)).

둘째, 독립성의 원칙을 취함에 있어서 인가업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립성의 원칙은, 첫째 관련된 피용자가 소비자에게 조언하거나 또는 재량을 발휘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위하여 거래할 때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상충을 무시하도록 요구하고, 둘째 인가업자에 의해서 서면을 기록되어야 하고 관련 피용자에게 알려져야 하며, 셋째 인가업자가 관련된 거래 또는 역무에 대해서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상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반소비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COB 7.1.7).

셋째, 내부적 장치로서 차단벽(chinese wall)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넷째, 만약 인가업자가 이상의 방법들 중 하나를 통해서 이익상충을 관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COB 7.1.9).

(다) 브로커펀드조언자에 대한 특칙

브로커펀드조언자(broker fund adviser)가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 인가업자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조언자(adviser)이자, 생명보험업자(long term insurer), 해외생명보험업자, 또는 브로커펀드의 운용자에 대한 조언자로서 수행하는 이중적 역할의 본질을 일반소비자가 이해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일반소비자로부터 얻어야 한다(COB 7.1.10).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소비자와의 이익상충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즉 이익상충의 고지, 독립정책, 차단벽, 거래거절 등을 행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한편, 인가업자도 이익상충을 막기 위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을 누린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이익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서 ICOB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투자적 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익상충을 막는 구체적 장치들에 대해서는 COB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합의된 투자전략에 비추어 불필요할 정도로 높은 빈도로 거래하는 것, 소비자의 계정에서 과도한 매매회전 하는(churn) 것을 금지하며, 또한 집합투자 내에서 또는 사이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승환하는(switch)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때에 적용된다(COB 7.1.1).

(3) 내용

인가업자는 일정한 경우, 거래(deal) 또는 승환만 별도로 볼 때, 그리고 이전 거래의 맥락에서 볼 때,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COB 7.1.3).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a)인가업자가 소비자를 위해서 재량을 발휘하며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b)일반소비자에게 거래를 하도록 개인적 권유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유의 효과를 갖는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c)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재량을 발휘하면서 어떤 일괄상품(packaged product) 내에서 또는 일괄상품들 사이에서 승환을 하거나 승환을 중개하는 행위, 또는 (d)어떠한 일괄상품 내에서 또는 일괄상품들 사이에서 승환하도록 일반 소비자에게 개인적 권유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유의 효과를 갖는 승환을 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과당 거래나 승환을 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과당거래나 승환은 소비자가 판단하여 선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문제라고 보아서 ICOB는 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1) 과당거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0.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빈번하게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4조는, “①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주식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정도의 거래가 빈번하거나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2.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3. 고객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주식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권유내용의 타당성

② 증권회사는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당해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점검방법·점검시기 및 점검 결과기록 등에 관하여 문서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승환거래

보험업법 제97조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4~14조는 과당매매거래를 금지한다. 과당매매거래의 금지는 증권회사에만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 일반고객을 상대방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는 승환을 금지한다. 승환의 금지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객을 상대방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과당거래나 승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ICOB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선행거래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서면권유를 하는 경우에 자기계정 거래를 연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주의를 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COB 7.3.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 또는 그의 관계자(associates)가 소비자에게 지정투자에 관한 서면권유, 또는 연구나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7.3.1).

(3) 내용

인가업자 또는 그의 관계자가 소비자에게 지정투자에 관한 서면권유, 또는 연구 또는 분석 자료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발간이 의도하는 대상인 소비자가 그에 기해서 행위할 합리적 기회를 갖지 않으면, 인가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따른다; 즉, 인가업자가 고의로 관련 지정투자에서 자기계정 거래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발간의 의도가 인가업자의 의도이거나 인가업자에게 알려진 경우) 인가업자는 자신의 관계자가 그 지정투자에서 고의로 자기계정 거래를 행해서는 안 된다(COB 7.3.3). 자기계정거래에 앞서서 고객계정거래가 선행되도록(dealing ahead) 하려는 것이다.

다만, 발간이 관련 지정투자의 가치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7.3.4).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에게 지정투자에 관한 서면권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계정거래보다 고객계정거래를 앞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선행거래가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ICOB처럼 비투자보험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라. 고객주문 순서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자기계정 주문과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는 데 공정해야 하며 이익상충을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4.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에 대한 소비자 주문을 집행할 때 적용된다(COB 7.4.1).

(3) 내용

인가업자는 지정투자에 대한 소비자 주문과 자기계정 주문을 공정하고 적절한 순서(duel turn)에 따라서 집행해야만 한다(COB 7.4.3).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인가업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COB 7.4.4).

첫째, 선행하는 자기계정 주문을 후속하는 현행(current) 소비자 주문보다 앞서서 집행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거래하는 자(person)가 사전에 미집행된 현행 소비자 주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행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둘째, 현행 소비자 주문에 앞서서 다른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는 것이 현행 소비자 주문의 집행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소비자 주문의 집행을 연기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셋째, 인가업자가 자신의 투자생명보험펀드의 계정을 위해서 거래하는 보험업자인 범위 내에서는 인가업자가 투자생명보험펀드를 소비자인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허용된다.

넷째, 인가업자가 자신과 동일한 그룹(group)에 속하면서 법인인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또는 기구(scheme)의 계정을 위하여 거래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을 소비자인 것처럼 다루는 행위이다.

다섯째, 인가업자나 그 관계자(associates)의 피용자(또는 가까운 친척),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수탁자를 소비자인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허용된다.

여섯째, 인가업자가 기업연금기구(OPS)의 계정을 위하여 거래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기업연금을 소비자인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허용된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소비자 주문과 자기계정 주문을 공정하게 적정한 순서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소비자 주문과 자기계정 주문이 처리 순서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ICOB처럼 비투자보험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마. 최선의 집행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2(인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와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증권시장 및 파생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현행 소비자 주문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가업자의 행위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5.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자에 대한 소비자 주문을 집행할 때 적용된다(COB 7.5.1).

(3) 내용

지정투자자에 대한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는 인가업자는 최선의 집행을 제공해야만 한다(COB 7.5.3). 다만 소비자 주문이 투자생명보험의 구입에 대한 것인 경우, 또는 집합투자기구(CIS)에 대한 권리의 구입 또는 그 상품의 운용자에게 상품에 대한 권리의 매각에 관한 것인 경우 등 예외도 규정되어 있다(COB 7.5.4).

최선의 집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a)인가업자가 해당 거래와 같은 종류 및 규모의 거래를 당시의 관련시장에서 소비자가 주문할 경우에 최선의 가격을 확인하는 데 합리적 주의를 발휘해야 하고, (b)인가업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에 소비자 주문을 집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이다(COB 7.5.5).

최선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COB 7.5.6~7.5.10이 규정하고 있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의 집행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의 경우는 단순히 가

격만으로 최선의 집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25조는, “① 증권회사는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를 위탁, 중개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업자로 부터 호가를 확인하는 등 당해 매매거래가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고객에게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부담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25조가 증권회사에게 최선의 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금융거래에도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COB와 ICOB처럼, 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바. 적기의 집행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2(인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현행 소비자 주문(current customer order)을 집행할 가장 적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6.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지정투자에 대한 현행 소비자 주문을 집행할 것을 동의하거나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7.6.1). 이 규정은 현행 소비자 주문에만 적용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자 주문(customer order)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현행 소비자 주문으로 된다(COB 7.6.3).

(3) 내용

인가업자가 재량을 발휘하여 지정투자에 대한 현행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때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COB 7.6.4). 만약 금융업자가 지정투자에 대한 현행 소비자 주문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COB 7.6.5).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지정투자에 대한 현행 소비자 주문을 집행할 것을 동의하거나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 적기의 집행을 할 것을 규정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는 그러한 재량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ICOB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23조는, “①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5조는, “③ 증권회사는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등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23조나 제4~25조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매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한다. COB는 인가업자가 재량을 가지고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증권업감독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COB를 참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ICOB처럼 비투자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사. 병합 및 분배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1(인가업자는 정직·공명하게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주문들을 병합하여(aggregate) 집행한 경우에, 관련된 지정투자를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도록(allocate)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B 7.7.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 주문을, 자기계정 주문이나 시장상대방 주문이나 다른 소비자 주문과 병합하고 이후에 관련된 지정투자를

분배하는 때, 지속적 적용 가능성이 있고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면상 분배정책을 준수해야 한다(COB 7.7.3).

(3) 내용

(가) 병합

인가업자는 소비자 주문을, 자기계정 주문이나 시장상대방 주문이나 다른 소비자 주문과 병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병합이 관련된 각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둘째 병합의 효과가 일정한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특정해서 또는 계약조건으로,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각 소비자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COB 7.7.4).

(나) 적기 분배의 요건

인가업자가 소비자 주문을, 자기계정 주문이나 시장상대방 주문이나 다른 소비자 주문과 병합한 경우에는, 관련된 금융거래를 즉시 분배하여야 한다(COB 7.7.5). 여기서 즉시란 상황 별로 1~3일의 거래일을 가리킨다(COB 7.7.6).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업자가 병합 주문을 집행하고 분배할 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COB 7.7.9). 첫째, 인가업자나 인가업자가 대신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부당한 선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만약 병합된 총 주문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소비자 주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고, 다만 인가업자 자신의 참여가 없었다면 해당 주문을 그러한 우호적 조건 하에서 집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근거 하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재분배

인가업자는 일정한 경우 병합된 주문의 수정된 분배를 행할 수 있다(COB 7.7.11).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a)분배에 실수가 발견되거나, (b) 주문이 단지 일부만 집행되어서 일정한 소비자에게 비경제적 배분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라) 분배의 가격

인가업자는 병합된 주문을 집행한 때 또는 수정된 분배를 행하는 경우에, 각 금융거래에 지불된 가격 또는 일련의 거래들의 가격들의 가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배해야 한다(COB 7.7.12).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 주문을 자기계정 주문 등과 병합하여 집행하고 분배하는 경우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25조는, “③ 증권회사는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

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고객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등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25조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병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병합, 분배의 원칙은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금융거래로 확대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ICOB처럼 비투자보험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아. 일반 소비자의 자산의 집행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자산의 실현을 포함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일반소비자에게 계약조건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B 7.8.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자신에 의해서 수행된 지정투자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소비자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일반소비자의 자산을 집행할(realise) 권리를 추구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7.8.1).

(3) 내용

인가업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소비자의 자산을 집행할 수 없다(COB 7.8.3).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한다. 첫째,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의 자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각 자산 또는 자산의 유형 또는 등급 등이 일반계약자에게 제공된 계약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산을 집행하기 적어도 3거래일 이전에 인가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통지한 경우이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일반소비자의 자산을 실현하는(realise)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하지만,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실현한 소비자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COB는 아

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만, ICOB처럼 비투자보험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자. 일반 소비자에 대한 대여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오직 적절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일반소비자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서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9.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 중에, 또는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7.9.1).

(3) 내용

(가) 원칙

인가업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정투자업 중에, 또는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중개할 수 없다(COB 7.9.3).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a)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가 고지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하고, (b)인가업자가 대여나 신용 수단 및 금액이 이미 제안된 투자합의 또는 일반소비자가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합의에 적합하도록(suitable)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c)일반소비자가 대부 또는 신용의 최대금액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금액 또는 기초에 대해서 서면의 사전동의를 해야만 한다.

(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OB 7.9.3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COB 7.9.5). (a)일반소비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기 이후에 변제하였기 때문에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의 증권 거래를 청산하는(settle) 경우, (b)인가업자가 5거래일 이내 기간동안 행해진 일반소비자에 대한 증거금청구에 사용하려는(cover) 경우, (c)생명보험업자가 투자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소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일반소

비자가 금전의 대여에 의지해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다만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이 예외이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제3자(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으로 당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은 증권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COB를 참조하여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도록 확대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COB와 ICOB가 보험을 예외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차. 증거금 요건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3(인가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증거금과 관련해서 스스로 과도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일반소비자의 추가부담(contingent liabilities)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0.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지정투자업 중에, 또는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우발적 채무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래를 집행한 경우에 적용된다(COB 7.10.1).

(3) 내용

인가업자는 우발적 채무부담이 있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시작할 때 또는 그 이후를 묻지 않고, 일반소비자로부터 증거금(margin)을 수령해야만 한다(COB 7.10.3(1)).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와 거래를 수행하기 전에 증거금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만 한다(COB 7.10.4). 만약 일반소비자가 증거금 청구에 대해서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면 인가업자는 해당 일반소비자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COB 7.10.5).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일반소비자가 과도한 신용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증거금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27조는, “증권회사는 법 제2조의2 및 영 제2조의3제5호 이외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이하 “현물위탁매매”라 한다)와 관련한 미수금(이하 이 절에서 “현물미수금”이라 한다) 및 법 제2조의2 및 영 제2조의3제5호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이하 “선물·옵션거래”라 한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이라 한다)의 미납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물미수금 및 선물·옵션위탁증거금 미납시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등의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8조는,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연락방법 등으로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9조는, “① 증권회사는 고객이 현물위탁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익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이 증권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업무규정 및 선물·옵션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또는 대응증권을 처분하는 등 위탁증거금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30조는, “① 증권회사는 고객과 유가증권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현물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선물·옵션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객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증권회사는 제1항 및 제4~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에는 증거금 관련 규정을 충실히 두고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금융거래에도 적용을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ICOB처럼 비투자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카. 장외거래증권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장외거래증권(non-exchange traded securities)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소비자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일반소비자와, 또는 일반소비자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장외거래증권을 그에게 매각하고 또한 자신을 그 증권에 대한 시장거래인(market maker)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COB 7.11.1).

(3) 내용

인가업자는 장외거래증권의 매각 이전에 일반소비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담은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COB 7.11.3). 여기서 일정한 내용이란, (a)통지 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동안 동 증권의 환매에 대한 합리적 가격이 가능하다는 점, (b)동 기간 이후에 일반소비자에 의한 동 증권의 매각이 동 증권의 본질과 비유동화 가능성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장외거래증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COB를 참조하여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3(인가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면서 소비자와 주문 등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COB 7.12.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 주문을 수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다른 자(person)에게 집행 선임하거나, 또는 더불어 자기계정 거래를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OB 7.12.1).

(3) 내용

인가업자는 위와 같은 소비자 주문을 집행하면서 일정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해야 한다(COB 7.12.3). 기록의 내용, 방식, 기간 등에 대해서는 COB 7.12.4~7.12.11이 규정하고 있다.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소비자 주문의 수령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에 대비한 바람직한 입법이다. 다만 COB와 ICOB에 따르면,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46조는, “① 증권회사는 <별표18>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 전자자료, 마이크로필름등의 형태로 3년이상(계약서등 권리, 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 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업감독규정 제4~46조는 증권회사가 소비자의 주문 등에 대해서 기록, 유지할 것을 규정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회사 또는 증권거래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COB나 ICOB가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을 예외로 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파. 개인계정 거래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3(인가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피용자의 개인계정거래(personal account dealing)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3.3).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COB 7.13.1). 투자생명보험은 개인계정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¹⁶⁾,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3) 내용

인가업자는, (a)자신의 피용자가 개인계정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인가업자가 자신의 소비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현 규제체계에서의 의무와 상충하지 않아야 하고, (b)만약 인가업자가 그러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해서 즉각적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인식할 수 있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COB 7.13.4). 일정한 피용자

16) FSA, Glossary.

의 자기계정거래에 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COB 7.13.6). 인가업자가 취해야 할 합리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COB 7.13.7).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자신의 피용자가 개인계정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다만 COB와 ICOB에 따르면,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

가)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42조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는, “신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신탁거래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탁회사의 주식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분석 및 개선안

증권거래법 제42조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탁업감독규정 제34조는 신탁회사의 주식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투자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나 신탁회사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 입법할 필요가 있다. COB와 ICOB가 투자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 프로그램거래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프로그램거래(programme trade)를 집행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관련되는 경우에 언제나 일정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4.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융상품에 관한 프로그램거래를 집행하는 인가업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프로그램거래란 자산구성(portfolio) 또는 대량 바스켓(large basket)의 증권을 소비자를 위하여 획득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으로 집행되는 거래를 가리킨다((COB 7.14.1).

(3) 내용

인가업자는, 프로그램거래를 집행하기 전에, 자신이 본인(principal)

또는 대리인으로 행위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의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내용과 다른 자격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COB 7.14.3). 인가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관련 소비자를 공정하게 취급했음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자신 또는 자신의 관계자(associate)가 프로그램거래에 포함된 금융거래에서 자기계정거래를 집행할 수 없다(COB 7.14.4).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프로그램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COB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투자생명보험 자체가 프로그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투자보험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COB를 참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에 적용 여지는 없다.

거. 非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1)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1(인가업자는 정직·공명하게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과 영업원칙 5(인가업자는 영업행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를 구체화한 것이다. 인가업자는 비시장가격(non market price)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7.15.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7.15.1).

(3) 내용

인가업자는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서 비시장가격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거래가 부적당한(improper) 목적으로 그 소비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COB 7.15.3). 다만 공인투자거래소(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비시장가격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COB 7.15.4).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지정투자업을 수행하면서 비시장가격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

람직한 입법이다. 비투자보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COB를 참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비투자보험의 경우에 적용 여지가 없다.

8. 거래확인에 대한 소비자의 통지

가. 영국

가) COB

(1)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인가업자가 거래 후 즉시 거래의 주요 상세를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COB 8.1.2).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가업자가 소비자와, 또는 그를 위하여 지정투자의 매수 또는 매도를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COB 8.1.1).

(3) 내용

인가업자는 거래의 주요 상세에 관한 서면확인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COB 8.1.3(1)). 주요 상세의 내용에 대해서는 COB 8.1.5~8.1.19가 규정한다. 투자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는 예외이다(COB 8.1.6(1)).

나) I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분석

COB에 따르면, 인가업자는 거래 후 거래내용을 즉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투자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약관의 고지가 상품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⁷⁾.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비투자보험에 대해서 ICOB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상품고지 의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업자가 거래성사시(계약체결시)에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9.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가. 영국

17) FSA, *Th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nsultation Paper 45a, 2000, p. 77.

1) COB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ICOB

가) 취지

이 규정은 영업원칙 3(인가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영업원칙 6(인가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원칙 8(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을 구체화 한 것이다. 보험업자 등이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ICOB 7.1.6).

나)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보험업자, 보험매개자, 관리대리인이 비투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적용된다(ICOB 7.1.1(1)).

다) 내용

(1) 공통 요건

보험업자 등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보험업자는 보험금 지급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ICOB 7.3.1).

둘째, 보험업자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희망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보험금 청구를 도울 수 있는 합리적 지침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ICOB 7.3.5).

셋째, 보험업자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를 비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ICOB 7.3.6(1)).

넷째, 보험매개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ICOB 7.4.3).

다섯째, 보험매개자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ICOB 7.4.5).

여섯째, 보험업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ICOB 7.3.2(1), 7.5.8).

일곱째, 보험업자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ICOB 7.3.2(1), 7.5.17).

(2) 특별 요건

보험업자는 소매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보험업자는 소매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통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ICOB 7.5.1).

둘째, 보험업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인지, 거절하면서 협상을 제안할 것인지,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지 여부를 소매소비자에게 가능한 빨리 통지해야 한다(ICOB 7.5.10).

3) 분석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는 보험 특유의 문제이다. ICOB는 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투자생명보험을 규율하는 COB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투자생명보험도 보험적 요소에 관해서는 ICOB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규제 의 형평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나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ICOB를 참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10. 영업규범의 위반시 처벌

가. 영국

만약 인가업자가 COB나 ICOB를 위반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첫째, 금융감독청은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FSMA2000 제205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FSMA2000 제206조).

둘째, 인가업자의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FSMA2000 제15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다. COB 부칙5 및 ICOB 부칙5에 따르면, 일반인(private person)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인(any other person)은 일정한 COB나 ICOB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COB나 ICOB의 일부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COB나 ICOB의 규정 중에서 조문 번호 다음에 E가 표시 있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COB 3.8.5, ICOB 2.4.3) 일반인 및 기타인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E에 해당하는 규정은 COB나 ICOB의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셋째, 인가업자의 피용자(employee)나 대리인(representative)이 COB

나 ICOB를 위반하면 인가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인가업자의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이 COB나 ICOB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가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공법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인가업자에게 피용자, 대리인, 선임대리인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지운 셈이다.

넷째, COB나 ICOB를 위반하여 성립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다만, FSMA2000 제30조는, 금융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금융광고를 한 결과 소비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1) 관련 규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2조는, “① 이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의 범위내에서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겸영·부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회사의 임직원 또는 증권회사의 업무를 선임받은 자(이하 이 편에서 “임직원등”이라 한다)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업무를 선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선임받은 업무범위내에서 증권회사의 위반행위로 본다.

③ 증권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감위는 임직원등의 위반행위가 일어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5항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 · 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 · 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2) 분석 및 개선안

첫째, 영업규범을 위반한 금융업자에게 가할 수 있는 공법적 제재에는 일반적으로 주의, 경고, 시정명령, 중지명령, 공표,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형벌, 과태료 등이 있다. 다만 금융관련 법률마다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보다 공법적 제재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금융업자의 영업규범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이하가 규율한다.

셋째, 금융업자의 임직원 또는 수임인이 영업규범을 위반한 경우 금융업자에게 공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는 가능하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2조는, 증권회사의 임직원 또는 수임인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임직원 또는 수임인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 규정의 위반에 따르는 공법적 제재(행정형벌과 과태료 제외)는 증권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그 임직원 또는 수임인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여타 금융업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행벌과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행위자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자인 임직원 또는 수임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 임직원 또는 수임인의 금융업자는 양벌책임 규정에 의거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금융업자의 임직원 또는 수임인이 영업규범을 위반한 경우 금융업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이를 긍정한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업자에게 자신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것이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여타 금융업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업규범을 위반하여 성립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다.